

화성시 마을단위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7. (장철규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2.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장철규 의원)

가. 제안사유

1) 액화석유가스(LPG) 미공급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주요내용

1) 액화석유가스 미공급지역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2) LPG공급시설 심의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LPG) 미공급지역에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미공급지역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 위원회 설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다. 이번 지원 조례안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7. (배정수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2.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배정수 의원)

가. 제안사유

1)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서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 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3조)

2)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화성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서민의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물가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임

다. 조례안을 통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통해,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지역 물가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7. (공영애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2.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공영애 의원)

가. 제안사유

- 1) 어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국·도비로 시행하는 사업 중 추가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 1) 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2) 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에 대해 열거함(안 제4조, 제5조)
- 3) 지원신청 및 지원금등의 교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어업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수록하고, 국·도비로 시행하는 사업 중 추가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은 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범위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임

다. 조례안을 통하여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7. (차순임 의원 등 6명)
-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2.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차순임 의원)

가. 제안사유

-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위임 사항들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안 제7조)
- 2)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계획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4) 신 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 5)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지정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위임 사항들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감축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다. 기후변화로 인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강조되는 시대에 제도 마련을 통하여 우리 시 탄소중립 추진에 이바지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7. (차순임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2.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차순임 의원)

가. 제안사유

- 1)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 1)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전은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근거 마련으로,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증가로 인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7. (조오순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2.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조오순 의원)

가. 제안사유

- 1)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1) 재활용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2) 재활용센터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3) 자전거 수리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의 기능 및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다. 조례를 통한 중고물품 교환 및 대형폐기물의 재사용 활성화로 자원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2.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곽재홍 자원순환과장)

가. 제안사유

-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추가하고, 다자녀 기준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동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다자녀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문장 정비(안 제7조제6항)

-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문장 정비

2) 모범납세자 관련 조항 신설(안 제7조제10항 신설)

-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감면 혜택 조항 신설

3) 위탁운영 조항 수정(안 제9조)

- 비영리단체, 「지방공기법」 제49조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위탁 대상자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다른 체육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대상을 추가하고, 다자녀 기준을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일치시킴으로써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조례개정으로 사용료 감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수혜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2.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오석만 농업정책과장)

가. 제안사유

- 1)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한시적 적용기간인 2022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로 변경하여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우려 농지 인근 농업인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화성시 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위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안 조례 제473호 화성시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농지의 보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부칙 제2조(유효기간)의 한시적 적용기간인 2022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개정사항으로는 부칙 제2조의 내용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로 변경하였음

다. 조례개정을 통하여 폐광산 지역 중금속 오염 우려농지 인근 농업인들의 수익을 보전하고, 화성시 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 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반복되는 부칙 개정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2. 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2022. 12. 20. 원안가결)

2. 제안요지설명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가. 제안사유

- 1) 공공급식 농산물 거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립한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화성시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공(학교) 급식 배송장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2) (재)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비 100% 출연으로 2016. 1. 1. 설립되었으며 로컬푸드 사업,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 판로 개척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기관으로,
- 3) (재)화성시푸드통합지원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기관이므로, 화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동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용위치: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91-5 外 3필지

○ 목적 및 용도

- 목적: 공공(학교)급식용 화성시 농산물 저온저장, 물류, 배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 용도: 화성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2) 사업규모

사업명	부지면적	건물 연면적(m ²)	층수	사용 허가자	주요시설	사용기간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리위탁에 대한 사용료 감면	11,916	2,884	2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농산물 저온저장 및 물류배송 등	준공일~5년간

○ 감면비율: 100% 감면(무상 사용)

○ 감면기간: 2023. 1. ~ 2027. 12. (5년)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2. 12. : 2022년 제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22. 12. :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결
- 2022. 12. : 준공 예정
- 2022. 12. : APC 위탁관리 운영 협약 체결(화성시-푸드센터)
- 2023. 1. ~ 2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
- 2023. 3. :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배송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이강석 전문위원)

가. 본 안건은 공공급식 농산물 거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건립한 화성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는 화성시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기관이므로, 동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임

다.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화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한 관리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